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64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황운하 · 정춘생 · 차규근
이해민 · 강경숙 · 김준형
신장식 · 서왕진 · 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의 집행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구치소·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과 형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지휘·승인·보고 등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서장의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와 협의하도록 변경하고, 형 집행 결과의 보고를 통보로, 구치소·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형의 집행정지에 관한 검사의 허가를 협의로 각각 정비함으로써 경찰과 검사

의 대등·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8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正式裁判請求書を 받은 警察署長은 지체없이 判事”를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警察署長은 第11條第5項”을 “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으로, “宣告・告知”를 “선고・고지”로, “7日 이내에 正式裁判을 請求”를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340조부터 제342조까지, 제344조부터 제352조까지,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即決審判 확정후 相當期間내에 執行”을 “즉결심판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집행”으로, “檢事에게”를 “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檢事は 刑事訴訟法 第477條에 의하여 執行”을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라 집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 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구류는 경찰서유치장·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때에는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종료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④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4條(正式裁判의 請求) ① <u>正式裁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被告人은 卽決審判의 宣告·告知를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正式裁判請求書를 警察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正式裁判請求書를 받은 警察署長은 지체없이 判事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u> ② <u>警察署長은 第11條第5項의 경우에 그 宣告·告知를 한 날부터 7日 이내에 正式裁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警察署長은 管轄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檢事(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正式裁判請求書를 判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 <u>判事는 正式裁判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警察署長에게 正式裁判請求書를 첨부한 事件記錄과 證據物을 송부하고, 警察署長은 지체없이 管轄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長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檢察廳 또는 支廳의 長은 지체없이 管</u>	第14條(正式裁判의 請求) ① <u>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u> ② <u>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 선고·고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u>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u>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 없이</u>

轄法院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刑事訴訟法 第340條 내지 第342條, 第344條 내지 第352條, 第354條, 第454條, 第455條의 規定은 正式裁判의 請求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準用한다.

第18條(刑의 執行) ① 刑의 執行은 警察署長이 하고 그 執行結果를 지체없이 檢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拘留는 警察署留置場·拘置所 또는 矯導所에서 執行하며 拘置所 또는 矯導所에서 執行할 때에는 檢事가 이를 指揮한다.

③ 罰金, 科料, 沒收는 그 執行을 종료하면 지체없이 檢事에게 이를 引繼하여야 한다. 다만, 卽決審判 確定後 相當期間내에 執行할 수 없을 때에는 檢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檢事는 刑事訴訟法 第477條에 의하여 執行할 수 있다.

④ 刑의 執行停止는 사전에 檢事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40조부터 제342조까지, 제344조부터 제352조까지,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第18條(刑의 執行) ①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류는 경찰서유치장·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때에는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③ 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종료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집행----- 검사에게 -----.
---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라 집행-----.

④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

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사와 협의하여야 한다.